

충청북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
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 정 문 화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신복순

충청북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박재주 의원 등 7명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25년 3월 4일

○ 회부일자 : 2025년 3월 5일

3. 제안이유

- 본 조례안은 「스포츠기본법」 제27조 및 「스포츠기본법 시행령」 제8조제2항에 따라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의 정의를 규정함 (안 제2조)
- 충청북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(안 제3조)
- 충청북도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4조)
-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5조)
-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6조)

5. 검토의견

가. 제정 필요성

- 본 조례안은 「스포츠기본법」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“스포츠의 날” 및 “스포츠 주간”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북도민의 스포츠 의식을 북돋우고 스포츠를 보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【참고】

- 우리 도를 제외한 전국 2개 시·도에서 유사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임.

시·도	서울	부산	대구	인천	광주	대전	울산	세종
제정일	-	-	-	-	-	-	-	-
시·도	경기	강원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
제정일	20.03.16.	-	-	-	-	-	-	23.05.10.

나. 조문별 검토

- ‘안 제1조’는 목적 규정으로, 「스포츠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스포츠 참여를 확대하고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함.
- ‘안 제2조’는 충청북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의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으로, 「스포츠기본법」 제27조에 따라 매년 10월 15일을 ‘충청북도 스포츠의 날’로, 4월의 마지막 주간을 ‘충청북도 스포츠 주간’으로 정의함.
- ‘안 제3조’는 충청북도 스포츠의 날 및 충청북도 스포츠 주간에 충청북도민의 스포츠 의식 고취 및 스포츠 보급을 위한 다양한 시책 마련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.

- '안 제4조'는 운영 규정으로, 충청북도 스포츠 주간에 ▲운동경기 (씨름 등 민속경기 포함), ▲레크리에이션 활동, ▲스포츠에 관한 전시회와 강연회 등 다양한 스포츠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.
- '안 제5조'는 충청북도 스포츠 주간 행사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,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 따라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·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.
- '안 제6조'는 포상 규정으로, 「충청북도 포상 조례」에 따라 충청북도 스포츠의 날 및 충청북도 스포츠 주간에 충청북도 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기관·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스포츠기본법」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충청북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.
- 이를 통해 충청북도민의 건강 증진과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, 특별한 이견은 없음.